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08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6년 4월 7일
- 회 부 일 : 2016년 4월 12일

2. 제안이유

-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시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2조)
- 나.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시세에 대한 세율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 다. 시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방법, 장부 비치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28조)
- 라. 지하수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 부과징수 및 부과대상 지역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 마.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교부함 (안 제26조, 제2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원안동의)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 조문대비표 : 전부개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6. 2. 4 ~ 2016. 2. 24)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추진 배경은 2016년 1월 기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납징수 관련 조문을 지방세기본법에 명시하는 징수체계개편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2015. 8)해 왔으며, 동 기본안에 맞추어 서울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제14조, 제28조, 제146조, 제151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 「지방세법」 제147조 제3항(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51개 조항에서 32개 조항으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13개 조항),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15개 조항),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4개 조항)하는 것임.

※ 조문과 관련한 비교 및 개정사유는 참고자료 참조

【시세 기본조례】 51개 조항⇒32개 조항

○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 등에 대해 법제운영 효율성 고려 정비(13개 조항)

- 법제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한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통일(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 정비(15개 조항)

- 과점주주의 신고(안 제5조), 장부비치의 의무(안 제6조), 담배반출(안 제 7조), 주민세(안 제10조, 제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고시(안 제28조)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및 특정부동산)의 신고납부 방법, 부과징수 및 부과대상 지역 등 (안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자치구 교부, 교부절차 등 규정(안 제26조, 제27조)

○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4개 조항)

- 금번 조례 전부개정은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복잡한 법령 체계를 정리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전 부 개 정 안	비 고
<p>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p>	<p>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p>	<p>○ 용어 정비 - 조문명 수정 등</p> <p>○ 용어 정비 -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 시세기본조례 띄어쓰기</p>
<p>제2장 취득세 제4조(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p> <p>제5조(신고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제4조와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취득물건의 소재지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p>제2장 취득세 제4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삭 제> ①~⑥</p>	<p>○ 조문 정비 - 「지방세법」 제2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조항 및 불필요 사항 정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용도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6. 차량·기계장비: 종류, 연식, 용도</p> <p>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p> <p>8. 선박: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p> <p>9. 입목: 수종, 수령, 주수, 재적</p> <p>10. 광업권: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의 연월일 및 등록번호</p> <p>11. 어업권: 어업의 종류 및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연월일 및 면허번호</p> <p>12.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장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간, 연간 이용일수</p> <p>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p> <p>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p> <p>15. 그 밖의 참고사항</p> <p>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때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차량, 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 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p>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p>○ 법(제10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점주주 신고조항은 존치 - 근거규정 수정</p>
<p>제3장 레저세 제6조(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 및 경마 등(이하 "경륜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경륜장·경정장 및 경마장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레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p> <p>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7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제3장 레저세 <삭 제></p> <p>제6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p>	<p>○ 「지방세법」 제 43조와 제45에서 규정</p> <p>○ 조례 7조 ⇨ 6조, 용어 정비 - 전산대장 관리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p> <p>제4장 담배소비세 제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제9조(장부 비치의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p> <p>제4장 담배소비세 제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삭 제></p>	<p>○ 조례 8조 ⇨ 7조</p> <p>○ 「지방세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음</p>
<p>제5장 지방소비세 제10조(지방소비세 납입 확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p> <p>제6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11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4,8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p><삭 제></p> <p>제5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의 세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4,800원 나. 시 관할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p>○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으며, 규정 불필요</p> <p>○ 조례 11조 ⇨ 8조 - 법제 효율성을 위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주민세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규정함</p>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2. 법인</p> <table border="1" data-bbox="188 360 687 1126"> <thead> <tr> <th>구분</th> <th>세액</th> </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50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35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20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100,000원</td> </tr> <tr> <td>그 밖의 법인</td> <td>50,000원</td> </tr> </tbody> </table> <p>제2절 재산분 제12조(세율) ①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p>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p>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2절 재산분 제9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 조례 12조 ⇨ 9조 - 법제 효율성을 위해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규정함</p>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p>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p> <p>제13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p>	<p>제10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p>	<p>○ 조례 13조 ⇨</p>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p>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0조</p> <p>-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필요 조항 정비</p>
<p>제3절 종업원분</p> <p>제14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p> <p>제15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p>제7장 지방소득세</p> <p>제1절 개인지방소득세</p> <p>제16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3절 종업원분</p> <p>제11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p>제6장 지방소득세</p> <p>제13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 조례 13조 ⇨ 10조</p> <p>- 법제 효율성을 위해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규정함</p> <p>○ 조례 15조 ⇨ 12조</p> <p>- 불필요 내용 정비</p> <p>○ 조례 16조, 16조의2 ⇨ 13조</p> <p>- 지방소득세 세율 조항 통합하여 규정</p>
<p>제2절 법인지방소득세</p>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제16조의2(세율) 법 제103조의2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p> <p>제8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7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8조(납부 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매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03조의2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7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삭 제></p>	<p>○ 조례 17조 ⇨ 14조</p> <p>○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으며, 규정 불필요</p>
<p>제9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9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p> <p>제20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21조(부과대상 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관할 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p> <p>제2절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p>	<p>제8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5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2절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p>	<p>○ 조례 19조 ⇨ 15조</p> <p>- 법제 효율성을 위해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규정함</p> <p>○ 조례 20조 ⇨ 16조</p> <p>- 일부 용어 정비</p> <p>○ 법제 효율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통합하여 31조에 규정</p> <p>○ 조례 22조 ⇨ 17</p>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제22조(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17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조 - 법제 효율성을 위해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규정함</p>																														
<p>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p> <p>제23조(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제22조 각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 기간을 매월 또는 격월로 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172 1155 663 1350"> <thead> <tr> <th>구분</th> <th>기간</th> <th>납기</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분</td> <td>1월부터 3월까지</td> <td>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td> </tr> <tr> <td>제2기분</td> <td>4월부터 6월까지</td> <td>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td> </tr> <tr> <td>제3기분</td> <td>7월부터 9월까지</td> <td>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td> </tr> <tr> <td>제4기분</td> <td>10월부터 12월까지</td> <td>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td> </tr> </tbody> </table>	구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p>제18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711 1202 1203 1487"> <thead> <tr> <th>구분</th> <th>기간</th> <th>납기</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분</td> <td>1월부터 3월까지</td> <td>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td> </tr> <tr> <td>제2기분</td> <td>4월부터 6월까지</td> <td>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td> </tr> <tr> <td>제3기분</td> <td>7월부터 9월까지</td> <td>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td> </tr> <tr> <td>제4기분</td> <td>10월부터 12월까지</td> <td>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td> </tr> </tbody> </table>	구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p>○ 조례 23조 ⇨ 18조 - 일부 용어 정비</p>
구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구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p>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p>③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p>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p>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p> <p>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채수계량기 설치 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p> <p>제24조(부과대상 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p> <p>제3절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 안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6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3절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9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0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 법제 효율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통합하여 31조에 규정</p> <p>○ 조례 25조 ⇨ 19조 - 일부 용어 정비</p> <p>○ 조례 26조 ⇨ 20조 - 일부 용어 정비</p>
<p>제27조(부과대상 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p>	<p><삭 제></p>	<p>○ 법제 효율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통합하여 31조에 규정</p>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제4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티이유(TEU)당 1만5천원으로 한다.</p> <p>제29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항하거나 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30조(부과대상 지역)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p> <p>제5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31조(과세표준과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p>	<p>제4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1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2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항하거나 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5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삭 제></p>	<p>○ 조례 28조 ⇨ 21조 - 법제 효율성을 위해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규정함</p> <p>○ 조례 29조 ⇨ 22조 - 일부 용어 정비</p> <p>○ 법제 효율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통합하여 31조에 규정</p> <p>○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님, 조항 불필요</p>
<p>제32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한 원자력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33조(부과대상 지역)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p> <p>제6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p>	<p>제23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7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5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 조례 32조 ⇨ 23조 - 일부 용어 정비</p> <p>○ 법제 효율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통합하여 31조에 규정</p> <p>○ 조례 34조 ⇨ 25조 - 법제 효율성을 위해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p>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59 358 678 772">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600만원 이하</td> <td>1,000분의 0.4</td> </tr> <tr> <td>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td> <td>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td> </tr> <tr> <td>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td> <td>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td> </tr> <tr> <td>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td> <td>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td> </tr> <tr> <td>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td> <td>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td> </tr> <tr> <td>6,400만원 초과</td> <td>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p>율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 통일성을 위해 6절을 7절로 이동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은 삭제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p>제5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31조(과세표준과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p>	<p>제5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삭 제></p>	<p>○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님, 조항 불필요</p>														
<p>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제1항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p> <p>③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항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제2항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p> <p>제35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를 따르고,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적어 고지한다.</p> <p>② 구청장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삭 제> ② ~ ③</p> <p><삭 제></p>	<p>○ 「지방세법」 제147조제2항에서 규정</p>														
<p>제36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 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신고 등은 법령에 의거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등에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p> <p>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서 규정 - 재산세 전산대장 관리 등으로 조항 불필요</p>
<p>제37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p>	<p><삭 제></p>	<p>○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신고 등은 법령에 의거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20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등에서 규정 - 재산세 전산대장 관리 등으로 조항 불필요</p>
<p>제38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물이나 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부과징수 규정등을 준용하므로 수시 부과 가능(지방세법 제115조제2항)하므로 규정 불필요</p>
<p>제39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에 따른 부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p>	<p><삭 제></p>	<p>○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원칙)에</p>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다.</p> <p>제40조(부과대상 지역)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행정구역 내 소방행정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p> <p>제7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p> <p>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p> <p>제42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43조(부과대상 지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p>	<p><삭 제></p> <p>제6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p> <p><삭 제></p> <p>제24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따라 현행부과</p> <p>○ 법제 효율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통합하여 31조에 규정</p> <p>○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아님, 조항 불필요 - 조문 통일성을 위해 7절을 6절로 이동</p> <p>○ 조례 42조 ⇨ 24조</p> <p>○ 법제 효율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통합하여 31조에 규정</p>
<p>제10장 특별시분 재산세</p> <p>제44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5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거나 환급되는 경우에는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p> <p>제46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2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p>	<p>제9장 특별시분 재산세</p> <p><삭 제></p> <p>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p> <p>제27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p>	<p>○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아님, 조항 불필요 재산세 수입의 50%만 특별시세로 간주, 재산세 부과징수 규정을 따름</p> <p>○ 조례 45조 ⇨ 26조 - 일부 용어 정비</p> <p>○ 조례 46조 ⇨ 27조 - 일부 용어 정비</p>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자치구에 교부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1장 재산세 도시지역분</p> <p>제4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p> <p>제4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p> <p>제49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로서 해당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지로 보아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다.</p> <p>제50조(부과·징수)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재산세액의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p>	<p>제10장 재산세 도시지역분</p> <p>제2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p> <p>제29조(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삭제></p> <p><삭제></p>	<p>○ 조례 47조 ⇨ 28조</p> <p>○ 조례 48조 ⇨ 29조 - 법제 효율성을 위해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규정</p> <p>○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규정</p> <p>○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아님, 조항 불필요</p>
<p>제12장 지방교육세</p> <p>제51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법 제151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신설></p>	<p>제11장 지방교육세</p> <p>제30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12장 보칙</p> <p>제31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p>	<p>○ 조례 51조 ⇨ 30조 - 법제 효율성을 위해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규정</p> <p>○ 법제 효율성을 위해 지역자원</p>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p> <p>제32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통합하여 조례 31조에 규정</p> <p>○ 시행규칙 근거조항 마련</p>